

# 서울특별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788
----------	------

2025년 6월 20일  
운영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. 5. 26., 이숙자 의원(26명 찬성)

나. 회부일자 : 2025. 5. 29.

다. 상정일자 : 제331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

- 2025년 6월 20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의회는 자치법규의 제·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입법·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운영중임.
- 그러나 최근 서울시는 매년 약 1.3%씩 증가하는 특허출원 등에 맞춰 지식재산권 창출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, 향후 자치법규 제·개정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등 기술적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.
- 따라서 현행 법률 전문가 중심의 입법·법률고문만으로는 기술과 법률이 융합된 쟁점에 대한 자문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바

입법·법률고문의 다양성 및 기술 분야의 검토 역량을 강화하고자  
변리사를 포함하여 운영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

#### 나. 주요내용

- 입법·법률고문 위촉 대상에 대한변리사회에 등록된 변리사를 포함  
(안 제4조제1항제2호 신설)
- 입법·법률고문이 수입한 소송비용의 처리 규정을 「서울특별시의회  
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」으로 변경(안 제10조 개정)

#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로 같음
- 기타사항
  - 1) 입법예고
    - 가) 예고기간 : 2025. 6. 3.(화) ~ 2025. 6. 7.(토) (5일간)
    - 나) 예고결과 : 없음
  - 2) 소관부서 의견조회
    - 다른 전문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입법·법률고문 위촉 대상이 아닌 별도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함.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최현재)

###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본 개정안은 서울시의회에서 운영중인 입법·법률고문에 기술 분야 자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변리사를 포함하여, 기술과 법률이 융합된 쟁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발의된 것임.

### 2 위촉 대상 추가(안 제4조제1항제2호)

- 본 조례안 제4조제1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의 위촉 대상에 대한 변리사협회에 등록된 변리사를 신설하고 기존 제2호 및 제3호를 순차적으로 정비한 것임.

<개정안 제4조제1항 신·구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위촉) ① 입법·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. 1.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 <u>&lt;신 설&gt;</u> 2. 서울 소재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 3. 입법·법률 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	제4조(위촉) ① ----- ----- . 1. (현행과 같음) <u>2. 대한변리사회에 등록된 변리사</u> 3. (현행 제2호와 같음) 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- 입법·법률고문은 입법업무와 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▲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 ▲ 서울 소재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 ▲ 입법·법률 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함.1)

- 개정안은 위촉 대상에 대한변리사회에 등록된 변리사를<sup>2)</sup>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변리사의 업무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을 수행하는 것임.<sup>3)</sup>
- 서울시의 지식재산권<sup>4)</sup> 점유율은 35.1%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매년 1.3%씩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등 중요성이 높아짐에<sup>5)</sup>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, 보호,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.

< '23년 서울시 지식재산권 국내출원 현황 >

(단위: 건)

구 분	특 허	실용신안	디 자 인	상 표	합 계	점유율
서울	54,023	504	15,772	94,758	165,057	35.1%
경기	61,623	860	15,770	59,670	137,923	29.3%
대전	11,594	46	1,217	5,158	18,015	3.8%
전국	191,142	2,400	49,936	227,238	470,716	100%

- 1) 「서울특별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」 제4조(위촉)
- 2) 「변리사법」 제3조(자격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. <'23.1.3.>
  1.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
  2.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
- 3) 「변리사법」 제2조(업무)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(鑑定)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(業)으로 한다. <'23.1.3.>
- 4) 지식재산권의 분류(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, 2페이지) 참조

단계	내용	예시
산업재산권	산업영역에서 일정기간 독점적·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	특허권, 실용신안권, 상표권, 디자인권
저작권	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	저작인격권, 저작재산권, 저작인접권
新지식재산권	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	데이터, 전통지식, 유전자원

- 5) 특허청 지식재산 통계 연보<2024>

(단위 : 건)

구 분	'13년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
특허출원	47,737	48,969	48,030	47,288	45,482	47,123	52,270	53,124	54,042	53,871	54,023

- 이에 따라, 서울시 입법기관으로 정책과 사무를 감사하며 정책 의회를 지향하는 서울시의회도 지식재산과 관련된 역량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으며, 개정안에 따라 입법·법률고문 위촉 대상에 변리사를 추가하여 자문단 구성을 다변화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사료됨.

### 3 관련 규정 정비(안 제10조)

- 안 제10조는 소송수임료와 관련하여, 2024년 1월 18일 제정된 「서울특별시의회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」을 법제담당관에서 반영하지 않아 금번에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.

<개정안 제10조 신·구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소송수임료 등) 입법·법률고문 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은 「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	제10조(소송수임료 등) ----- ----- -- 「서울특별시의회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.

### 4 종합검토

- 본 조례안은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서울시에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, 지식재산권 등 법률과 기술이 융합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발의된 것임.
- 현행 「서울특별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」 제4조제1항제3호에서는 법률 전문가 외에도 일정 경력을 갖춘 비법조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총 24명의 입법·법률고문 중 23명이 법조인임.<sup>6)</sup>

6) 입법·법률고문: 법조인 23명, 입법 관료 1명(위촉기간: '23.5.23.~'27.5.22.)

- 따라서, 본 개정안을 통해 위촉 대상에 변리사를 추가함으로써 서울시의회의 입법·법률고문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, 지식재산 관련 전문성을 강화한다면 서울시의회의 입법 지원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.
- 또한, 향후 서울시의회는 행정 및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당 전문 분야의 입법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입법·법률고문을 운영하여 시의적절한 입법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임.

담당 연락처

02-2180-7691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6. 토론요지 : 없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.

8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# 서울특별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숙자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8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6일

발 의 자: 이숙자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규남,  
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  
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 
김춘곤, 김태수, 김혜영,  
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 
유만희, 윤기섭, 윤종복,  
이봉준, 이상욱, 이성배,  
이종태, 이종환, 임춘대,  
최민규, 황철규 의원(26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의회는 자치법규의 제·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입법·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운영중임.
- 그러나 최근 서울시는 매년 약 1.3%씩 증가하는 특허출원 등에 맞춰 지식재산권 창출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, 향후 자치법규 제·개정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등 기술적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.
- 따라서 현행 법률 전문가 중심의 입법·법률 고문만으로는 기술과 법률이 융합된 쟁점에 대한 자문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입법·법률 고문의 다양성 및 기술 분야의 검토 역량을 강화하고자 변리사를 포함하여 운영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입법·법률고문 위촉 대상에 변리사를 규정함(안 제4조제1항제2호)

### 3. 참고사항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## 서울특별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2. 대한변리사회에 등록된 변리사

제10조 중 “「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”를 “「서울특별시의회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위촉) ① 입법·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(생략)</p> <p>②~③ (생략)</p>	<p>제4조(위촉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대한변리사회에 등록된 변리사</u></p> <p>3. (현행 제2호와 같음)</p> <p>4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소송수임료 등) 입법·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「<u>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</u>」을 준용한다.</p>	<p>제10조(소송수임료 등) ----- ----- ----- 「<u>서울특별시의회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</u>」에 따른다.</p>

# 서울특별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(위촉)제1항제2호에 “대한변리사회에 등록된 변리사”를 추가하여 입법·법률 고문의 다양성 및 기술 분야의 검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간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[참고] 2025년도 입법·법률고문 운영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사업명	예산액(천원)
의회 입법, 법률 고문 운영	163,340

※자료: 2025 서울시 예산서(의회사무처)

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담당관  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주병준  
추계세제팀장      김중헌  
추계분석관        김지혜  
☎ 02-2180-7952  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